

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

[시행 2016. 4. 26.] [항공기상청훈령 제53호, 2016. 4. 26., 일부개정]

항공기상청(기획운영과), 032-740-280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·승진·포상·징계·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제3조(구성) ①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.
 ② 위원장은 항공기상청장(이하 "청장"이라 한다)이 되며 위원은 항공기상청의 각 과(팀)장과 필요시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. 단, 승진심사를 할 경우에는 대상직급 보다 상위직급의 소속직원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.

제4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
2.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
3.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포상 시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
4.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징계결정에 관한 사항
5.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
6.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기타 인사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부터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

제8조(심의요구) 기획운영과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·승진·포상·징계·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

제9조(공개제한) 인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0조(운영지침) 항공기상청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 및 기상청인사관련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 <제53호,2016.4.26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